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3.

발 의 자 : 김성회 · 박 정 · 이수진
허성무 · 권향엽 · 서미화
양부남 · 박정현 · 김영환
안태준 · 윤건영 · 조승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도로 상에서는 「도로법」에 따라 점용허가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)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,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.

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8항 신설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</u>